

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,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「자동차등록령」 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
- 예고기간 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26. 07. 10.(금) ~ 2026. 07. 24.(금)
2. 이의제기 기한 : 2026. 10. 22.(목) 까지
3. 말소등록예정일 : 2026. 10. 23.(금) 이후
4. 공고대상 및 내용

차량번호	송달 대상자		자동차 소유자			말소예정일
	성 명	주 소	성 명	생년월일	사용본거지	
17조2184	윤** 윤**	소재불명	윤**	1935.12.20.	경상남도 창원시	2026.10.23. 이후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4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07. 10.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